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- 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- 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 - 가.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25일까지
 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 - 다. 제출내용
 - 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 - 2) 성명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 - 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 - 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 - 2) 전화번호 : 031-390-8730, FAX 031-392-4004
 - 3) 전자우편 : power11222@korea.kr
- 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 - 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રમોલી મો Q	찬성여부		A) 74		ul –
조례안 내용	찬성	반대	의	견	비고

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훈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이훈미,이길호,신경원
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○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규정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2조 "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" 정의 조항 신설
- 나. 안 제5조제4호 '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' 규정 추가 삽입
- 다. 현행 제6조 '안전시설 확충'을 '안전한 근무환경 마련'으로 보호범 위 확대
- 라. 안 제6조의2 '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여건 개선' 조항 신설

3. 관련법령

O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"을 "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담당"으로, "안전시설을 확충함"을 "안전한 근무환경 등을 마련함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"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(이하 "민원담당자"라 한다)"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군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공무원
 - 나. 공무직 근로자
 - 다. 기간제 근로자
 - 라. 그 밖에 시와 고용ㆍ계약관계를 맺고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

하는 사람

2. "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(이하 "민원실 민원담당자"라 한다)"란 「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민원담당자를 말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"을 "민원을"로, "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"을 "민원담당자의"로, "예방이나 치유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"을 "예방과 치유를 위하여"로, "지원을 할수 있다"를 "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
- 4. 법률상담 및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 원

제6조의 제목 "(안전시설 확충)"을 "(안전한 근무환경 마련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필요한 경우 안전시설"을 "다음 각 호의 안 전시설·장비 등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CCTV 및 비상벨 설치
- 2.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
- 3. 녹음 전화 설치
- 4.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(안전유리) 설치 등 안전장치
- 5.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시설 설치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여건 개선) 시장은 민원실 민원담당 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
- 2. 연 1회 이상 인사고충 상담 실시
- 3.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
- 4.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
- 5.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제2항 중 "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"을 "제5조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인의 제1조(목적) ----- 민원을 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| 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예 업무담당 ---------- 안전한 근무환경 등 방·치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 을 마련함-----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"군포시 민원업무담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당 공무원 등"(이하 "민원담당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자"라 한다)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군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 1. "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 원 등(이하 "민원담당자"라 한 속 공무원 다)"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|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를 접수·처리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. 가. 군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

소속 공무원

2. 공무직 근로자

- 3. 기간제 근로자
- 4. 그 밖에 시와 고용·계약관계 | 를 맺고 민원업무를 접수·처 리하는 사람
- 제5조(보호 및 지원사항) 시장은 제5조(보호 및 지원사항) -----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·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 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<u>원을 할 수 있다</u>.
 - 1. 2. (생 략)
 - 3.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

- 나. 공무직 근로자 다. 기간제 근로자 라. 그 밖에 시와 고용·계약관 계를 맺고 민원업무를 접 수·처리하는 사람
- 2. "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 (이하 "민원실 민원담당자"라 한다)"란 「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... 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민 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민 원담당자를 말한다.

<삭 제> <삭 제>

민원을 --------- 민원담당자의 --------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----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 다. 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3.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

4. 법률상담

5. · 6. (생략)

제6조(안전시설 확충) 시장은 민 제6조(안전한 근무환경 마련) ---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4. 법률상담 및 고소·고발 또 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
- 5. · 6. (현행과 같음)

-----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·장비 등의 -

- 1. CCTV 및 비상벨 설치
- 2.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 전요원 배치
- 3. 녹음 전화 설치
- 4.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(안전 유리) 설치 등 안전장치
- 5.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자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
- 제6조의2(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) 시장은 민원실 민원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.
 - 1.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
 - 2. 연 1회 이상 인사고충 상담 실시

제10조(지원 결정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시장은</u>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 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.

<u>3.</u>	적절한	휴식을	위한	여건	마
į	<u>런</u>				

- <u>4.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</u> <u>실시</u>
- 5.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지원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2	<u>제5조제3</u>
<u>\overline{\ove</u>	